

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

1. 목적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에 의거하여 한남대학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험실의 안전상태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실험·실습실을 조성하고자 함.

2. 개요

- 가. 과업명 : 2024년도 한남대학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
나. 장 소 : 오정동 및 대덕밸리 캠퍼스
다. 기 간 : 계약일로부터 45일간
라. 현장점검 : 2024. 04. 09. ~ 2024. 05. 24.(45일간)
- 1일 최대 40실 이하로 점검 실시(법적사항 준수)
- 단순한 PC실 및 사무실 용도의 경우 1일 최대 40실까지 가능
마. 과업규모(204개 실험실)

※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및 감소 될 수 있음

3. 진단일정

일 자 공정내용	점검 수행기간(45일)			
	5일	6일	24일	10일
계약/점검일정 협의				
현장 정밀안전진단				
결과 보고서 작성				
보고서 협의 / 제출 및 공포				

4. 특기사항 및 과업내용

가. 점검업체 필수사항

- 1)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업체

- 나.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인 업체

- 1) 점검(예정)기간 :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
- 2) 점검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
다. 참여기술자 편성(연구실정밀안전진단)

1) 진단 참여자 편성은 필히 대행기관 등록 인원으로 한다.

2) 진단 인원

가) 기술사(가스) 1인 / 고급기술자(기계, 화공) 각 1인 / 중급기술자(소방) 1인, 서류작성 인력은 초급기술자(산업안전) 이상 1명, 총 5인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복되는 기술자가 없어야 한다.

5. 현장점검반 편성

가.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은 일반안전, 기계안전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소방안전, 가스안전, 산업위생안전, 생물안전 등 각 분야별로 실시해야 한다.

나. 현장점검반은 가스기술사 1명과 기계, 화공, 산업위생 고급인력, 서류작성 인력 4인으로 총인원 5인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“가”항목의 각 분야별 중복되는 기술자가 없어야 한다.

6. 계약체결

가.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.

나. 용역수행자는 현장점검 일정을 반드시 염수해야 한다.

다. 착수계 제출 시 용역수행자는 수행계획서, 참여기술자(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술자) 현황, 경력 및 자격관련 현황, 점검장비 명세서(사진포함) 사항을 첨부한다.

라. 용역수행자는 관련법 및 과업내용에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
마. 용역수행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된 인력만 투입한다.

바.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,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.

사. 용역수행자는 용역결과 및 용역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면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아. 용역수행자는 점검 시 학사일정(수업) 및 연구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진단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한다.

자. 용역수행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체 없이 점검자료 및 점검 장비를 보완하여 성실히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.

차. 용역수행자는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, 체크리스트,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, 안전교육 교재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.

7. 계약해지

가.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 및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나.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“5. 계약체결”을 엄수해야 하며, 상기 내용을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인력과 다른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라.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점검내용 공개 또는 문제를 발생 시켰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손해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.
- 마. 용역업체 개인의 특수사정, 무성의,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이 진척이 되지 않아 기일 내에 완료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8. 업무수행 내용

- 가. 용역업무 수행자는 건물 출입시 출입자 명부를 제출한 후 정밀안전진단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수행한다.
- 나. 담당자가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확인 및 자료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액 용역업체 부담으로 한다.
- 다. 용역업체는 완료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을 재시행해야 하며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.
- 라. 실험실수는 점검하는 중에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며 증·감(10% 내·외)의 경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.
- 마.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기하며, 업체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.
- 바. 용역업체는 과업지시서 등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- 사. 현장조사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상 실험실의 사용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와 협조하여 조치한다.

9. 세부 사항

- 가. 용역업체는 관련법규 등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일정 및 업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한다.
- 나. 측정 장비가 필요한 사항은 장비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- 다.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해 **실험실별** 반드시 점검사항을 사진 촬영하도록 한다.

10. 보고서 작성

- 가. 보고서에 포함된 근거 자료는 현장 사진촬영을 원칙으로 하며, 육안검사 사진, 측정 장비 결과표, 자문의견서,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.

나. 결과보고서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31호 별표6)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○ 점검·진단 개요

- 점검·진단 배경 및 목적
- 추진 일정 및 대상 실험실
- 실험실별 점검·진단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(점검·진단인력 서명 포함)
- 점검·진단 방법
- 점검·진단 범위

○ 안전관리 현황

- 안전관리 조직
- 안전교육 실시
- 안전관련 예산
- 실험실 유해인자(위험기계·기구, 화학물질 등)
- 사고현황,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

○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

- 점검·진단 결과 평가 등급
 - 가. 평가등급 기준
 - 나. 평가등급 분석
 - 다. 실험실별 평가등급 현황
 - 라. 점검장비를 사용한 측정값
- 분야별 주요지적(점검·진단 사항)
 - 가. 일반안전 나. 기계안전 다. 전기안전 라. 화공안전
 - 마. 소방안전 바. 가스안전 사. 산업위생 아. 생물안전
 - 자.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의 적정성(특별안전점검·진단에 한함)
 - 차.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(특별안전점검·진단에 한함)
 - 카.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(특별안전점검·진단에 한함)

○ 결론 및 개선대책

11. 결과물 제출

- 가. 결과보고서(종합) 및 요약보고서 칼라 각 3부
- 나. 과업 수행 중 촬영한 점검 사진 1식
- 다. 각 결과에 대한 자료 인쇄물 3부
- 라. PDF자료 제출(컴퓨터 열람용). 끝.